

1. 개정이유

해양환경관리법 개정(해양오염방지관리인 '임명·보유' 관련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)

2. 주요내용

해양환경관리법 개정(해양오염방지관리인 '보유' 의무 명확화)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정비(안 제64조)

-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'임명'에서 '임명·보유'로 일괄 문구 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령 제00000호

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제3호 중 “임명”을 “임명·보유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4조(출입검사 항목) ① (생략)	제64조(출입검사 항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생략)
3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	3. ----- ----- <u>임명·보유</u> ----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